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 
2020. 6. 19(금) 10:00

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

## I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,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II.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세입·세출 결산

### 1.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

#### 가. 세입 총괄

(단위: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 (B/A)
계	6,799,050,000	7,376,959,210	5,713,178,980	77.4%
교통행정과	3,375,324,000	3,724,497,070	2,098,318,770	56.3%
주차관리과		272,510	272,510	100%
건설행정과	2,101,726,000	2,287,726,660	2,250,124,730	98.3%
도 로 과	775,650,000	817,946,360	817,946,360	100%
치 수 과	546,350,000	546,516,610	546,516,610	100%

#### 나. 세출 총괄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 (B/A)
계	10,443,489,580	9,461,371,038		450,780,672	90.5
교통행정과	1,796,644,000	1,717,161,438		63,396,162	95.5
건설행정과	372,861,000	332,972,280		39,769,490	89.3
도 로 과	4,629,692,580	3,943,357,670	514,403,950	171,382,960	85.1
치 수 과	3,644,292,000	3,467,879,650		176,232,060	95.1

○ 2019회계년도 교통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57억 1,317만 8천 원으로 징수률77.4%이며

○ 일반회계 지출액은 94억 6,137만 1천으로,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.5%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,440만원이며, 집행잔액은 4억 5,078만원임.

다. 집행잔액(불용액)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집행잔액	불용율 (%)	사 유 별			
				계획변경등집행 사유미발생	예 산 감	예 산 집 행 액	보 조 금 집 행 잔 액
계	10,443,489,580	450,780,672	4.3	53,213,800	-	397,566,872	-
교통행정과	1,796,644,000	63,396,162	3.5	-	-	63,396,162	-
건설행정과	372,861,000	39,769,490	10.7	-	-	39,769,490	-
도로과	4,629,692,580	171,382,960	3.7	1,660,000	-	169,722,960	-
치수과	3,644,292,000	176,232,060	4.8	51,553,800	-	124,678,260	-

○ 교통건설국 집행률 저조사업

(단위:원)  
(단위 : 원)

부 서 명	세부사업명	예산액(가)	지출액(나)	이월액(다)	집행잔액 (가-나(다))	집행률 (나/가)
주차관리과	공영주차장 건 설	8,200,416,000	1,857,034,250	2,653,041,540	3,690,340,210	22.6

※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(집행률 70% 미만 사업)

※ 교통행정과, 건설행정과, 도로과, 치수과는 해당사항 없음

○ 교통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4.3%로 이는 전년도 7.5% 대비하여 3.2% 감소함.

## 2.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

○ 예산전용 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건수	전용금액	비고
계	6	75,842,000	
교통행정과	1	5,890,000	
도로과	2	63,000,000	
치수과	3	6,952,000	

○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의 예산전용은 총 6건 7,584만 2천원을 전용하였음.

○ 예산이체 현황 : 해당 내용 없음

### 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○ 명시 이월사업비 현황 : 2건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세 부 사 업	통계목	예 산 현 액	원인행위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 월 사 유
계			1,852,838	1,538,933	294,560	
도로과	관내 도로 보수	시설비	1,564,318	1,271,424	280,000	[집행시기미도래] '19.12.특별교부금이교부되었고,'19.11.~'20.2.까지동절기굴착공사 전 면 중 단 에 따 라 '20.3.~'20.12.사업수행예정
	신속한 제설대책	시설비	288,520	267,509	14,560	[집행시기미도래] 제 설 대 책 기 간 이 '19.11.15.~'20.3.15.임에 따라제설장비수리비용이월

○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: 4건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세 부 사 업	통계목	예 산 현 액	원인행위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 월 사 유
계			2,132,843	1,818,246	219,843	
도로과	관내 도로 보수	시설비	1,564,318	1,271,424	85,483	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겨울철 발생할수 있는 도로 및 시설물 파손에 적극 대비코자 '19.3.31.까지 계약
	신속한 제설대책	재료비	111,005	110,313	4,360	강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염수살포장치임대를 제설 대책 기간인 '20.3.까지 계약
	신속한 제설대책	민간위탁금	169,000	169,000	80,000	제 설 대 책 기 간 이 '19.11.15.~'20.3.15.이므로 연도내 집행불가
	신속한 제설대책	시설비	288,520	267,509	50,000	제 설 대 책 기 간 이 '19.11.15.~'20.3.15.이므로 연도내 집행불가

○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중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,

- 명시이월은 총 2건 2억 9,45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- 사고이월은 총 4건 2억 1,984만 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### Ⅲ. 201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#### 1. 세입결산 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계	16,782,600,000	25,491,004,210	16,985,645,080	66.6%
세외수입	5,598,392,000	14,312,797,630	5,807,438,500	40.5%
보조금	2,678,629,000	2,672,629,000	2,672,629,000	100%
보전수입등 맞내부거래	8,505,579,000	8,505,577,580	8,505,577,580	100%

○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

- 예산 현 액은 167억 8,260만원이고
- 징수 결정액은 254억 9,100만 4천원이며
- 수 납 액은 169억 8,564만 5천원임.
-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66.6%로 전년도 수납율<sup>(59.9%)</sup> 보다 6.7%가 증액되었으며,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40.5%이며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

## 2. 세출결산 현황

(단위: 천원)

부 서 명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%
주차관리과	16,782,600	7,243,859	2,653,041	6,855,339	43.1

- 201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67억 8,260만원으로, 72억 4,385만 9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8억 5,533만 9천원으로 집행률은 43.1%임.

## IV.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

### ○ 기금 결산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
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2,623,564,070	62,300,230	1,425,448,930	1,363,148,700	2,685,864,300
옥외광고발전기금	1,017,042,810	35,831,420	146,677,990	110,846,570	1,052,874,230
도로굴착복구기금	1,606,521,260	26,468,810	1,278,770,940	1,252,302,130	1,632,990,070

-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, 도로굴착 복구기금 2개 기금으로,
- 전년도말 조성액은 26억 2,356만 4천원이며
  -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6,314만 8천원으로
  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6억 8,586만 4천원임.

# 참 고 자 료

## ☞ 예산·결산 자료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### 제134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9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###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(移替)할 수 있다

### 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##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 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 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## 「지방회계법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- 제14조(결산의 수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☞ 기금 관련 자료

#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7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####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